

民法

第四編 親族・第五編 相續

改正法案

1984. 10.

가족법 개정을 위한 여성연합회

서울특별시 용산구 3가 40-427

(794-4560)

民 法 中 改 正 法 律 案

議案

番號

發議年月日 1984. . .

發議者 議員外 人 ㊟

提 案 理 由

우리 憲法이 指向하는 自由民主主義的 基本秩序의 鞏固化와 時代의 變遷에 副應하는 合理的인 倫理를 摸索하기 爲하여 本法의 改正案을 提案한다.

1. 人間平等의 原則을 俱現하기 爲함이다.

世界人權宣言 第1條는 “ 모든 사람은 生まれ부터 自由롭고 同等한 尊嚴性和 權利를 가지고 있다. ” 라고 宣言하고, 우리 憲法 第10條는 “ 모든 國民은 法앞에 平等하다. 누구든지 性別·宗教· 또는 社會的 身分에 의하여 政治的·經濟的·社會的·文化的 生活의 모든 領域에 있어서 差別을 받지 아니한다 ” 라고 宣言하고 있다.

나아가 1980年 第五共和國의 出帆과 함께 改正된 憲法에서는 第34條에서 “ 婚姻과 家族生活은 個人的 尊嚴과 兩性の 平等을 基礎로 成立되고 維持되어야 한다 ” 는 規定을 新設함으로써 世界人權宣言의 人間平等의 理念을 國家社會의 基礎單位인 家庭生活에서 부터 俱現시키려는 강한 意志를 分明히 나타내고 있다.

따라서 現行 家族法(民法 第4編 親族 및 第5編 相續)에서의